

러시아 특허제도

백 현 태¹⁾

1. 서론

러시아측은 자국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룩한 연구개발의 성과가 외국의 특허획득 등 지적재산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1994년 제4차 한·러 과기공동위부터 시작하여 그 이듬해 제5차 회의에서 공식의제로 제기하였으며 공식적인 외교통로를 통하여 「한·러 지재산권 협정(안)」을 제출하는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쌍무협정체결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6차 한·러 과기공동위에서 러시아의 知的財産權 문제가 논의되었다. 우리측은 제5차 과기공동위에서 제안한 지적재산권 분배에 대한 부속서(안)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자체 부속서(안) 제시를 요구하였고, 러시아 측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이내에 제출함과 더불어 과학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국한하여 과기협력협정의 부속으로 규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양국은 세부사항을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차제에 러시아의 지적재산권제도와 관련한 러시아 法制를 고찰해 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特許制度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러시아의 특허제도

1) 구소련의 특허제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일체의 발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特許法을 公布하였다. 신경재정책 시기에는 개인의 산업활동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으나 1931년 "發明 및 技術의 完成에 관한 法則"이 공포된 이후 발명에 대한 國家所有原則을 견지해 왔다. 구소련은 발명이나 발견에 대해 發明者證을 교부하고 일정액의 補償金을 지불해 왔다. 발명의 경우 발명자증과 특허 가운데 택일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전자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特許手數料가 아주 비싼 반면 발명자증은 무료였던 데 기인했다.

1991년 구소련은 당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발정책의 일환으로 發明者證制度 廢止와 競爭原理 導入을 골자로 하는 新特許法을 제정하였으나 체제 붕괴로 인해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소연방 붕괴 이후 이를 계승한 러시아연방이 暫定措置로서 구소련 특허청의 조직과 기능을 귀속시켜 특허법을 衣用하였다.

2) 러시아의 특허제도

러시아연방 정부는 1992년 새로운 특허법과 상표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에는 "러시아연방 특허·상표청에 관한 법령"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을 발함으로써 特許業務 專擔機關으로서 러시아 특허청의 역할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특허청 傘下機構로는 과학기술심사기관, 抗告審判所, 特許圖書館, 産業財産權保護院, 특허정보센터 등을 설립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보호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施行細則으로 "발명출원의 작성, 출원방식 및 심사규칙", 변리사법, 그리고 수수료 지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은 노력은 1993년 聯邦 新憲法 제71조에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보호규정으로 明文化되었다. 현행 특허법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諸原則들을 기초로 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 창의, 경쟁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소연방 해체로 독립국가간 특허권의 법적 보호 문제와 신생 독립국가의 산업재산권제도의 부재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獨立國家聯合 9개국은 유라시아 특허협정 (Eurasian Patent Convention)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 및 유럽특허청(EPO)의 승인과 1993년 당사국들의 서명으로 유라시아 특허협정이 가시화 되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력을 통해서도 출원절차 간소화, 수수료 지불방식, 발명자증 이전문제, 출원정보 교환, 산업재산권 관련법의 통일화 등을 모색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도 가입, 파리협약 당사국들과는 상표법 통일화 및 분쟁해결 방식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특허협력은 소련 붕괴 이전인 1990년에 모스크바에서 韓·蘇 特許協力協定에 조인한 것이 시초였다.

4) 러시아 특허법 및 특징

현재 러시아 특허법은 1992년 聯邦特許法에 입각해 있다. 신특허법은 중요 사항에서는 '91년의 발명법과 구소련의 산업디자인법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特許에 의한 保護主義를 비롯해서 특허 존속기간, 특허가능성의 기준, 그리고 발명자 중의 특허 전환 및 특허신청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구법과 마찬가지로이다.

동시에 新法은 많은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實用新案權을 도입하여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을 單一法規範으로 통합했다. 또한 僱傭關係에서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개별 발명자 등 個人보다는 使用者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상표권을 제외한 여타 산업재산권 관련조항을 특허법에 포함시켰다. 특히 실용신안의 산업상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허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구소련의 發明者證制度를 폐지함으로써 발명이용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아닌 自然人和 法人에 귀속시켰고 불법적인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보호를 명시하였다. 특허권의 存續期間은 발명의 경우에는 출원으로부터 20년, 의장의 경우 출원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여 UR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 (TRIP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실용신안도 출원으로부터 5년으로 짧게 잡아 기술수명주기의 단명성이라는 현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出願方式에서는 先出願主義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출원은 發明家, 承繼人 또는 法人이 할 수 있으며 外國人은 반드시 代理人을 통해야 한다. 出願審査는 예비심사와 실제심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無審査가 원칙으로 이는 실용신안 등록심사까지의 시간을 단축하여 실용신안의 조기 권리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한편, 독립국가연합 구성국간 체결된 특별 협정은 상대국에 특허 출원시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수수료를 동등하게 하는 등 내국인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5)러시아 특허제도의 問題點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는 유럽의 특허제도를 토대로 하여 제정됨으로써 先進的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制度上的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산업재산권 보호라는 實務的 次元에서는 후진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허법 시행과 관련한 大統領令, 聯邦 閣議의 決議案 및 特許廳 規範 등 수많은 규칙과 刑法 등 관련법규가 전체를 이루어 특허보호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法的基盤에는 몇가지 해결되어야 할 問題가 있다.

첫째, 被雇傭者의 研究 結果와 관련한 직무발명 규정의 不完全하다. 특허법 제8조 後節은 고용자의 권리와 의무의 대해 포괄적인 정의를 두었을 뿐, 연구자의 補償이나 支拂期日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사용자가 축적한 경험과 사용자 소유의 기계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개선에 대해서는 규정한 반면, 피고용자가 자신의 공식적인 의무와 책임을 초과해서 창출한 업적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경우 어떤 관계, 즉 雇傭關係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民法도 적용되는가가 불분명하다. 둘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법적제도가 全無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민수화된 비밀기술 市場의 창출에 불가결한 것으로서, 우선은 군산복합체와 민수용 생산으로 전환하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며, 우주비행과 핵에너지 생산과 같이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特許分爭의 仲裁 節次에 관한 규칙의 不在이다. 특허법에 의하면, 強制實施權 청구등에 대한 제 1심조사는 물론, 特許 許與 또는 無效에 관한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최고 특허 재판소의 책무이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있어 최고 재판소는 설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訴訟 提起 가능성 문제에서는 法廷마다 立場이 다르다. 法院組織과 民事裁判에 관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백개의 地方法院이 최고재판소의 管轄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最高裁判所 대신에 特別裁判所를 설립해서 현행법이 최고 특허재판소에 위임한 분쟁만을 다루게 하거나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다루게 하는 方案일 것이다. 넷째, 이제까지의 慣行에 입각해 볼 때 特許法 自體의 修整이 필요하다. 특히 節次와 用語가 다듬어져야 한다. 다섯째, 外國人의 特許 出願 애로이다. 낙후된 통신 및 우편제도와 期間 延長에 따른 手數料 등 추가경비는 出願人의 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다. 國際機構와의 情報交流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며 조직정비 및 擔當公務員의 實務教育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特許業務에 電算化 未備이다. 러시아 특허청은 1970년부터 특허 업무 전산화에 착수하였으나 財政難으로 인해 서방에서 일반화되어있는 CD-ROM정보검색 시스템을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사 및 처벌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자 대다수의 발명가들은 Rospatent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자국보다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출원에 필요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外國과의 合作出願을 모색하고 있다.

3. 러시아 특허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일반적인 資料 確保

蘇聯 時代의 國家獨占主義로부터 私有化로 이행함에 따라 러시아 政府보다는 個人 또는 特許 保有機關과의 협의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특허청 및 지방의 과학기술 情報局을 통해 개략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에 발명가 및 기관과 직접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2) 발명, 특허권자 및 서방특허 등록 여부확인

발명가가 一人이 아닐 경우 일일이 確認하는 節次가 필요하며 해당기술 또는 변형된 기술의 實施權 契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방국가의 누가 연구기관을 방문했는가, 그리고 競爭國의 기관이 이미 해당기술을 획득했는지 면밀한 확인절차가 중요하다. 많은 연구소가 소속 부서의 일부를 私有化함으로써 말미암아 당해 연구자가 원래의 기관에 소속된 被雇傭者 身分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사유화된 연구소와 기존의 연구기관 모두 籍을 갖고 있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결국 지적재산권 교섭시 접촉당사자가 어느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知的財産權의 所有者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3) 有望技術 出願 方法

러시아 특허법은 발명가가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出願費用 때문

에 활발하지는 못하다. 우리측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러시아 발명자의 이름으로)이 러시아 발명기술에 대해서 西方國家에서의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출원비용을 부담하기 이전에 우선 러시아 과학자가 모든 委任 書類에 署名하게 해야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출원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교섭하기가 점차 어려워 지게 된다.

4, 결론

'96년 7월 중순 러시아 議會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비밀사항이 아닌 情報에 대한 接近의 自由와 연구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基金申請과 著書 發刊의 自由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다. 동시에 러시아 과학부가 제출한 研究管理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科學 發展法令(DDRS)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연구자들이 러시아의 자유화 기간 중에 획득한 권리들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자국과학기술 보호 움직임과 과학자들의 높아진 權利意識은 앞으로의 한·러 과기협력과 그의 따른 특허권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각국은 지적재산권이 國富의 源泉이라는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知識의 公共財로서의 성격보다는 財産權的 性格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特許權의 確保라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기본전략에 특허 관련 분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국내 특허 획득은 물론 先行技術에 대한 정보와 제3국 共同出願을 모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석 1) 과학기술국제협력단 국제협력실. 협력2팀원(Tel: 02-250-3237)